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9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체육청소년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11. 6.(수)
- 회부일자: 2024. 11. 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(2024. 11. 29.)

## 2. 개정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고
- 기존 다자녀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대상을 자녀 세 명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 보다 나은 양육환경조성이 이바지하고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신당체육센터 사용료를 기존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으로 신설하고자 함.

## 1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등의 반환에 “이용자 취소 및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기준”을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르도록 함(안 제10조 제1항)

나. 신당체육센터 사용료를 신설함(별표 3 제5호)

다. 사용료 등의 감면에 “자녀 세 명 이상”을 “두 명 이상”으로 확대함(별표 4)

## 4. 관계법령

- 「소비자기본법」 제4조, 제16조
-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제1조, 제2조, 제3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당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,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수를 2자녀로 확대하며,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최근 출생률 감소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정부시책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조정하고,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있어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며
-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체육시설(신당체육센터)의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.
- 또한 사용료의 책정에 있어 다른 체육시설에 비추어 충분히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개정된 내용 등이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명사 사이에 사용되는 쉽표가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, “불가능한 경우” 뒤에 사용된 쉽표

는 “불가능한 경우”와 “위약금 배상”을 같은 자격으로 열거하고, “등”은 이외의 것으로 각각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문맥상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“불가능한 경우에”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법령을 비롯한 각종 규정, 규칙, 고시, 지침 등에는 훈납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,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은 고시의 제명이고,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의 주체이므로 이를 “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” 혹은 “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”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## 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**

## **7. 심사결과: 수정가결**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불가능한 경우,”를 “불가능한 경우에”로 하고, 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”을 “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”으로 한다.

### 개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10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사용자의 취소 및 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<u>불가능한 경우</u> ,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<u>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</u> 을 준용한다.	제10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사용자의 취소 및 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<u>불가능한 경우에</u>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<u>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</u> 을 준용한다.
②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